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7. 9.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 제명을 조례안 목적에 맞게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함. (안 제명)

나. “(이하 “구”라 한다)”를 “(이하 “마포구”라 한다)”로 함. (안 제2조
제1항)

다. 제목 “(대표도서관의 지정)”을 “(대표도서관의 지정 등)”으로 함. (안 제5조)

라. “구민을 대상으로”를 “도서관은 구민을 대상으로”함. (안 제8조제1항)

마. “구 지역 사료와”를 “마포구 지역 사료와”로 함. (안 제15조제3항)

바. “구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를 “마포구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로 함. (안 제16조)

사. “전임위원의”를 “전임위원 임기의”로 함. (안 제18조제4항)

아.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중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함.
(안 제20조제3항)

자. 제목 “(수탁자의 선정)” 을 “(수탁자의 선정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함(안 제22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이하 “구” 라 한다)” 를 “(이하 “마포구” 라 한다)” 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대표도서관의 지정)” 을 “(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구민을 대상으로” 를 “도서관은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안 제15조제3항 중 “구 지역 사료와” 을 “마포구 지역 사료와” 로 한다.

안 제16조 중 “구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를 “마포구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로 한다.

안 제18조제4항 후단 중 “전임위원의” 를 “전임위원 임기의” 로 한다.

안 제20조제3항 중 “위원회” 를 “운영위원회” 로 하고, 같은 항 중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한다.

안 제22조의 제목 “(수탁자의 선정)” 을 “(수탁자의 선정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한다.(안 제22조)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u>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운영 조례</u>	<u>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2조(소재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구” 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2조(소재 및 명칭) ① ----- ----- ----- (이하 “마포구” 라 한다)----- -----.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
제5조(대표도서관의 지정)① ~ ④ (생 략)	제5조(대표도서관의 지정 등)① ~ ④ (원안과 같음)
제8조(이용대상) ① <u>구민을 대상으</u> <u>로</u>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8조(이용대상) ① <u>도서관은 구민</u> <u>을 대상으로</u> ----- -----.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
제15조(기부·기증·기탁)①·② (생 략)	제15조(기부·기증·기탁)①·② (원안과 같음)
③ 관장은 국제적인 기구의 발간 물이나 <u>구 지역 사료와</u> 같이 정상 적인 유통 과정을 통해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 관련 기관과 의 협약을 통해 자료를 기탁 받을	③ ----- <u>마포구 지역 사료와</u> ----- ----- ----- -----.

수 있다.

④ (생략)

제16조(행정자료) 구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물품출납원은 각종 간행물 등 행정 자료 발간 시 2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①.

② (생략)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 대표도서관장, 총무·기획예산·문화·교육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관계 전문인사 및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원안과 같음)

제16조(행정자료) 마포구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8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①.

② (원안과 같음)

③ -----

-----전임위원 임
기의-----.

제20조(회의 등)① (생 략)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수탁자의 선정)① ~ ③ (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 2명

3. 4. (생 략)

⑤ (생 략)

⑥ 수탁자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생 략)

제20조(회의 등)① (원안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

----- . ----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수탁자의 선정 등)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
----- .

1. (원안과 같음)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 —

3. 4. (원안과 같음)

⑤ (원안과 같음)

⑥ -----

----- . ----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원안과 같음)